

2026년 제2회 공무원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청주외국인보호소 2026년도 제2회 공무원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로형태	담당업무
청주외국인보호소	조리원	1명	공무직(무기계약) ※ 단, 만 60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1년)로 채용함	- 조리·배식 등 단체급식 - 식자재 및 조리실 관리 등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 근로자(단, 만 60세 이상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근무시간 및 보수

근무시간	보수	비고
○ 격일 근무 원칙 - 1일 근무/1일 휴무 - 시간 : 06:30 ~ 19:00 ※ 연중 1~2개월 평일 주간근무 (10:00~19:00)	○ 고정급 - (격일근무기준) 월 2,729천원 - (평일주간근무기준) 월 2,482천원	※ 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소속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 지급 ※ 4대보험 가입(건강.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 세액공제 전 정액급식비 포함 ※ 고정 연장 공휴수당 포함

※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근무시간 등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급여 변동 가능
※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만 63세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

3.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법무부훈령 제1601호, 2025.12.30.)
-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법무부훈령 제1620호)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응시 자격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3세 미만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 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최종 면접시험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휴일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체계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나.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우대사항
공무직 근로자 (조리원)	○ 조리 관련 경력자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 한해 인정 - 연차별 차등배점 ○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 서류전형 단계(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서만 적용 ※ 경력 관련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근무기간·직급·담당업무가 명시) - 발행기관의 직인이 찍힌 제출된 경력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 3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해 경력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함(합산 1년 이상 경력 사항만 인정)

다.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가점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 1개만을 적용함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금번 채용은 채용분야별 각 모집인원이 4명 미만으로 **법정가점 미적용**)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 응시자의 자격 · 제출서류 등이 부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합격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하며, 개별면접으로 진행,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면접시험 평정 요소〉

- | | |
|--------------------|-------------------|
| 1.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2.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 3.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4. 윤리의식과 책임성 |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점사항(사회형평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4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단, 면접위원이 2명일 경우 위원 전원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임용결격사유, 신원조사 불합격 등)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가점사항 기산)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9. 21.(월) ~ 9. 30.(수)	'26. 9. 22.(화) ~ 9. 30.(수)	'26. 10. 14.(수)	'26. 10. 20.(화)	'26. 10. 21.(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청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등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9. 22.(화) ~ 9. 30.(수)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2863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채용담당
 - 겹봉투에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응시원서 재증' 으로 표기
 - 문의전화 : 043-290-7512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총괄표 1부(제출내역 체크 후 자필서명)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서명 자필,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로 작성)	○ 별지서식 제4호
	주민등록등본(모두) 및 초본(남성만)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남성에 한하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별지서식 제5호 (생년월일만 표기)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8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공정채용확인서 1부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경력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회사)명(직안)과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만 인정	
	한식양식중식일식 등 조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명서류 1부 (수급(지원)기간 명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기준) 각 1부
-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1부(사진부착)
- 반명합판(3cmX4cm)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8. 참고사항

- 공무직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 분야와 상관없는 학력,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할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등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사 또는 신원조회 결격사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 취소 또는 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별지서식 11】 양식을 작성하여 사전 연락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청구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20.(금),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 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 043-290-7512, 7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접수여부를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4.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9. 공정채용확인서

10. 경력(재직)증명서

1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붙임 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 . .	청주외국인보호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필 수	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1】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 제출 ☐ 미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초본추가 1부 발급)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	☐ 제출 ☐ 미제출
	⑦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별지서식 6】	☐ 제출 ☐ 미제출
	⑧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7】	☐ 제출 ☐ 미제출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8】	☐ 제출 ☐ 미제출
	⑩ 공정채용확인서 1부 【별지서식 9】	☐ 제출 ☐ 미제출
해 당 자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근무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서식 10】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조리 분야(한식·일식·중식·양식 등)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사회형평가점 증명서류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란에 반드시 “√” 표시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 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상기 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 후 스테이플을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성명 : (서명)

청 주 외 국 인 보 호 소 장 귀 하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도 제2회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공무원근로자(조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청주외국인보호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귀하

※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한자)
복수국적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 해당있음 () (외국국적:)	생년월일	
현 주 소	(우:)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

※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표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성명	
20 년 월 일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우편접수분의 응시표는 면접 당일 교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3. 면접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관리과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합니다.
5.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② 성 명: 정자로 기재합니다.
- ③ 생년월일: 정자로 기재합니다.
- ④ 주 소: 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⑤ 연락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이 력 서

가. 공통 사항							
응시 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 기관	청주외국인 보호소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 우대 사항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근무 연·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

다. 가산 사항			
가 산 요 건	구분	세부내용	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청 주 외 국 인 보 호 소 장 귀 하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업무실적,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청 주 외 국 인 보 호 소 장 귀 하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학력 및 가족관계 등이 직접 서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완요청 없이 불합격 될 수 있음)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등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근로자 채용 관련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범죄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공무원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근로자 채용 관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공무원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근로자 채용 관련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정보 등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공무원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 주 외 국 인 보 호 소 장 귀 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공무원 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5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5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 주 외 국 인 보 호 소 장 귀 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 경력,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 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 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별지서식 10】 (예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등의 문제로 출력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_____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대표자 : _____ (인)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발급자</th> </tr> <tr> <td style="width: 20%;">소 속</td> <td></td> </tr> <tr> <td>직 급</td> <td></td> </tr> <tr> <td>연 락 처</td> <td></td> </tr> <tr> <td>성 명</td> <td>(인)</td> </tr> </table>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별지서식 11】 ※ 응시서류 반환 청구 시 작성
(필수 제출서류 아님, 채용절차 종료 이후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요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외 국 인 보 호 소 장 귀 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